

대구광역시 달성군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시행 2026.01.01]
(제정) 2025.10.10 조례 제3159호

관리책임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53-668-25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의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발달장애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제6조(보장기준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상 사고에 대한 보장으로 하며, 배상책임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신체·재산상 피해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칙(조례 제3159호, 2025. 10. 1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